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695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
정재웅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
최정순. 홍성룡. 김경우 의원(43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'자매결연'을 '상호결연'으로 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"자매결연"을 "상호결연"으로 한다. 제13조의2제1항 중 "자매결연"을 "상호결연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 략)	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1~2. (생 략)	1~2. (현행과 같음)
3. <u>자매결연</u> 의 체결이나 교류	3. <u>상호결연</u>
행사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	
<u>+</u>	
4~6. (생 략)	4~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2(예산 편성・집행)	제13조의2(예산 편성・집행)
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	①
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, 활	
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	
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	
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.	
이 경우 국가공식행사, 국제	
회의, <u>자매결연</u> 사항에 해당	<u>상호결연</u>
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	
을 추가 편성·집행할 수 없다.	
②~③ (생 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